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3415 |
|----------|-------|

발의연월일 : 2025. 10. 1.

발 의 자 : 문진석 · 김준혁 · 윤종균  
박홍근 · 이성윤 · 김남근  
이기현 · 박상혁 · 안태준  
조인철 · 이용우 · 이훈기  
박홍배 · 오세희 · 김동아  
박용갑 · 김교홍 의원  
(17인)

### 제안이유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저출생 · 고령화,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과 같은 시대적 과제들은 특정 정부나 개별 부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중층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 이러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지혜를 모으는 폭넓은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수적임.

그동안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우리나라 사회 · 경제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이제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대화의 창구를 다원화하고 그 폭을 넓혀야 할 때임.

이에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부인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축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국회는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참여하고 있어,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공간임. 또한, 국회에서 논의된 사회적 합의는 곧바로 법률안과 예산안 등 안건 심의 과정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정책 변화와 입법적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따라서 이 법은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대화를 비롯한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숙의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국회가 갈등의 조정자이자 사회 통합의 촉진자로서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중장기적 현안에 대한 통합적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이고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또한, 의장이 이러한 사회적 대화를 비롯하여 국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변화한 정치·사회 환경 속에서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장은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회적 대화를 비롯한 다양한 참여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안 제10조제2항 신설).

나.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두고 복합위기·미래문제 대응 및 국

가적 현안 해결에 필요한 경우 사회의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 간의 또는 관련 이해관계당사자 간의 협의·합의·갈등조정을 위한 사회적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사회적대화위원회는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 등의 이해를 대변하도록 구성하되, 그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위촉함(안 제126조의2 신설).

다. 의장은 사회적대화위원회가 사회적대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고, 소관 위원회는 이를 존중하여야 함. 또한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정부 등에 이송할 수 있으며, 정부 등은 그 처리결과를 6개월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26조의3 신설).

라. 국회는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조직·지원방안,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관련 전문가의 활용 등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안 제126조의4 신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의장은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회적 대화를 비롯한 다양한 참여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장의2(제126조의2부터 제126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장의2 사회적 대화

제126조의2(사회적 대화 추진) ① 국회는 사회의 복합위기 및 미래문제 대응이나 중요한 국가적 현안 해결에 필요한 경우 해당 의제별로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 간의 또는 관련 이해관계당사자 간의 협의·합의·갈등조정을 위한 대화(이하 “사회적대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 ② 사회적대화를 위하여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사회적대화위원회는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 또는 의제별 당사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구성하되, 그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③ 사회적대화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된다. 세부적인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6조의3(사회적대화 결과 보고·처리 등) ① 사회적대화위원회는 사회적대화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해당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공표한다.

③ 의장은 결과보고서를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 행정기관 등에 이송할 수 있다.

④ 결과보고서를 송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그 내용·취지를 관련 의안 심사에 반영한 경우 또는 제51조에 따라 제안한 경우 그 반영 사항을 해당 심사보고서 또는 의안 등에 표기한다.

⑤ 결과보고서를 이송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그 처리 결과를 이송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6조의4(사회적대화 지원체계) ① 국회는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조직·지원방안, 관계기관에 대한 각종 협조 요청, 관련 전문가의 활용 등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체계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의장의 직무) (생   략) | 제10조(의장의 직무) ① (현행 제<br>목 외의 부분과 같음)                                                                                                                                       |
| <u>&lt;신   설&gt;</u> | <u>② 의장은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회적 대화를 비롯한 다양한 참여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
| <u>&lt;신   설&gt;</u> | <u>제9장의2 사회적 대화</u>                                                                                                                                                        |
| <u>&lt;신   설&gt;</u> | <u>제126조의2(사회적 대화 추진) ①</u><br><u>국회는 사회의 복합위기 및 미래문제 대응이나 중요한 국가적 현안 해결에 필요한 경우 해당 의제별로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 간의 또는 관련 이해관계당사자 간의 협의·합의·갈등조정을 위한 대화(이하 “사회적대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u> |
|                      | <u>② 사회적대화를 위하여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사회적대화위원회는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 또는 의제별 당사자의 이해를 대변</u>                                                                                       |

<신 설>

할 수 있도록 구성하되, 그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③ 사회적대화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된다. 세부적인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6조의3(사회적대화 결과 보고·처리 등) ① 사회적대화위원회는 사회적대화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해당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공표한다.

③ 의장은 결과보고서를 소관위원회에 송부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 행정기관 등에 이송할 수 있다.

④ 결과보고서를 송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신 설>

그 내용·취지를 관련 의안 심사  
에 반영한 경우 또는 제51조  
에 따라 제안한 경우 그 반영  
사항을 해당 심사보고서 또는  
의안 등에 표기한다.

⑤ 결과보고서를 이송받은 정  
부, 행정기관 등은 그 처리 결  
과를 이송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126조의4(사회적 대화 지원체  
계) ① 국회는 사회적대화위원  
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  
한 지원조직·지원방안, 관계기  
관에 대한 각종 협조 요청, 관  
련 전문가의 활용 등 지원체계  
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체계 마  
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으로 정한다.